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8887

발의연월일: 2025. 3. 13.

발 의 자:윤건영・박지원・신정훈

김영배 · 차지호 · 이해식

서영석 • 위성락 • 채현일

최기상 · 소병훈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의사의 결격사유 규정을 두어, 그 사유의 하나로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이하 "마약중독자등"이라 함)'를 규정하면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수의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인정하는 사람'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다른 결격사유로 '이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동물보호법」, 「의료법」 또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의료법」에서는 마약중독자등은 예외 없이 의료인이 될수 없도록 하고 있고, 의료인의 결격사유의 하나로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이는 사기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법에도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지

적이 있음.

이에 수의사의 결격사유에서 마약중독자 중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수의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제외하도록한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형법」 제347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등을 결격사유에 추가하여 수의사의 자격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규정함으로써, 동물이 보다 높은 수준의 진료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제5조).

법률 제 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의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이 법"을 "이 법, 「형법」 제347조(허위로 진료비용을 청구하여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진료비용을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의사 결격사유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5조제3호 단서에 따라 수의사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는 제5조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	제5조(결격사유)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	
의사가 될 수 없다.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마약, 대마(大麻), 그 밖의	3
향정신성의약품(向精神性醫藥	
品) 중독자. <u>다만, 정신건강의</u>	<u><단서 삭제></u>
학과전문의가 수의사로서 직	
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	
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	
<u>다.</u>	
4. <u>이 법</u> , 「가축전염병예방	4. <u>이 법, 「형법」 제347조(허</u>
법」,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로 진료비용을 청구하여 동
「동물보호법」, 「의료법」,	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약사법」, 「식품위생법」	진료비용을 지급하는 기관 또
또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	는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
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u>한다)</u>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아니	
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